

	보 도 자 료 12.6[금] 석간부터 보도	
---	--	---

작성부서	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대응센터	손해보험협회 기획조정부		
책 임 자	채한기 센터장 (2262-6635)	신종혁 부장(3702-8530)		
담 당 자	김희경 팀장 (2262-6658)	박상조 팀장(3702-8540)		
배포일자	2019.12. 6.	배포부서	(생보험회) 2262-6605 (손보험회) 3702-8612	총 2매

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행 안내('20.1.1)

1 추진 배경

-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
 -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하며,
 -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*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**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(보험업법 § 185)
 - * 금감원(보험개발원)이 주관하는 전문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감원에 등록한 자
 - **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
- 다만,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·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(언론, 국회 등)
 - 이에,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('19.6.12)
 - 생·손보험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 기준을 제정하고 '20.1.1.부터 시행 예정

2 주요 내용

-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“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”을 제정
 - (손해사정 선임 관련 안내)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
 -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*
 - * 서면, 문자메세지, 전자우편, 전화, 팩스 등으로 안내(선임권 안내시에도 동일)
 -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,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가능
 - (통계자료 공시)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, 선임 요청건수,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
 - (실손의료보험 별도 동의기준 마련)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
-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생·손보업계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예정
 -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 예정

3 기대 효과

-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